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26. 3.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2월 5일, 박수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6년 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3.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4.) 상정,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5.)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3.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3.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수영의원)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대미투자의 국익 관련)

○ 대미투자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기업이 대미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

○ 대미투자는 한미산업동맹 강화 및 글로벌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며, 정부는 대미투자의 성과가 국내로 환류되도록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관련)

○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에 따라 책임 분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국회의 전략적투자 통제 관련)

○ 개별 전략적투자에 대하여 국회 사전 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0억불 이상의 전략적투자는 국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 전략적투자에 대한 국회 동의 규정은 리스크 헷지 기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투자 보고 주체를 정부로 일원화하고, 전략적투자의 경제영향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관련)

○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여 공사에서 인프라 투자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부펀드 운용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이므로 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한국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존 조직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함에 따라 책임이 분산되고, 옥상옥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김병기의원·홍기원의원·진성준의원·박성훈의원·안도걸의원·정일영의원·박수영의원·김건의원·정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